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장애인복지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보건복지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「장애인복지법」이 개정(법률 제20511호, 2024. 10.22. 공포, 2025.4. 23. 시행)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법 제40조의2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(안 제23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)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(이하 “장애인 보조견”이라 한다)의 필요성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
2.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,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
1.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·배포

2.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

3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3조의2(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)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u> <u>1.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(이하 “장애인 보조견”이라 한다)의 필요성 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</u> <u>2.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</u> <u>3.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목적 및 내용과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,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</u> <u>1.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</u>

	<u>제작·배포</u> <u>2.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</u> <u>3.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의</u> <u>규정에 준하여 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</u>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2 - 3282